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및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7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86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폐유기용제 및”을 “폐유기용제,”로, “폐기물은”을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3 제3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수은회수시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 명 래

●대통령령 제30862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원수”를 “원수(原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수하여”를 “정수(淨水)하여”로 한다.

제28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 나. 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전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로 운영하는 사업 중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 비용의 지원 대상으로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 비용만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수(原水) 중 지오스민(Geosmin) 또는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